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분야 정책 및 연구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본부에 두는 3개 국장급 기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를 확대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위에 본부의 3급 또는 4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본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7. 00.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통상팀·남북산림협력팀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복지국 밑에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을 각각 신설하며,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원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9일에서 2025년 7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산림항공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

청 정원 2명(6급 2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 조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 행정구역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해외자원담당관·임업통상팀 및 남북 산림협력팀”을 “국제협력담당관·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업통상팀장”을 “임업수출교역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6.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제7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을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서울·수원·양산·부여·영암”을 “서울·수원·양양·영덕·구미·양산·정읍·영암·함양·부여”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부터 같은 조 제5항 단서까지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림디지털담당관·도시숲경관과장”을 “도시숲경관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321”을 “322”로 하고, 일반직 계 “316”을 “317”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5”을 “64”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6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를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33”을 “334”로 하고, 일반직 계 “328”을 “329”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6”을 “65”으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6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를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제451호 및 제5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8호 및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5년 7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3년 7월 29일”을 “2025년 7월 29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2026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1]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제16조제1항관련)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북부지방산림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 동부지방산림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                                  |
| 남부지방산림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
| 중부지방산림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서부지방산림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2]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 명 칭 |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지 방 | 국유림<br>관리소 |                    |                                                                         |
| 북 부 | 춘 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화천군·철원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과 경기도 가평군                             |
|     | 홍 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br>홍천읍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
|     | 서 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과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
|     | 수 원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 |
|     | 인 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br>인제읍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
|     | 민 북<br>지 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br>양구읍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및 화천군·철원군·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
| 동 부 | 강 릉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br>연곡면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양 양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br>양양읍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     | 평 창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br>대화면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영 월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br>영월읍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정 선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br>정선읍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삼 척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하장면을 제외한다)·동해시                                              |

|     |     |              |                                                                                 |
|-----|-----|--------------|---------------------------------------------------------------------------------|
|     | 태 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
| 남 부 | 영 주 |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                                                    |
|     | 영 덕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
|     | 구 미 | 경상북도 구미시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김천시·구미시·상주시·경산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
|     | 울 진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 경상북도 울진군·울릉군                                                                    |
|     | 양 산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
| 중 부 | 충 주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증평군                                                        |
|     | 보 은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
|     | 단 양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     | 부 여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시 |
| 서 부 | 정 읍 | 전라북도 정읍시     |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완주군                                        |
|     | 무 주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 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
|     | 영 압 |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나주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장흥군                 |
|     | 순 천 |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

|     |              |                                                      |
|-----|--------------|------------------------------------------------------|
| 함 양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일반직공무원</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br>-----<br>--- <u>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u> ---<br>-----<br>-----.                |
|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u>국제협력담당관 · 해외자원담당관 · 임업통상팀 및 남북산림협력팀</u> 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 <u>국제협력담당관 · 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u> -----<br>-----<br>-----<br>-----<br>-----<br>-----.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⑤ <u>임업통상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 ⑤ <u>임업수출교역팀장</u> -----<br>-----<br>---.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6. <u>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7. <u>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u>                                                           |
| ⑥ <u>남북산림협력팀장</u> 은 다음 사                                                                                                                | <u>&lt;삭    제&gt;</u>                                                                          |

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  
의 사항의 이행 지원

3. 북한의 산림 조성·보호 등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사  
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  
민참여 계획의 수립·시행

5.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  
내외 홍보전략의 수립·시행

6. 북한 산림 관련 정보 분석·  
연구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산림산  
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② ~ ⑨ (생략)

제8조(산림복지국) ① (생략)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정책  
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  
치유과·산지정책과 및 산림일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

-----  
----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복지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산림안전

자리창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⑧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제9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⑫ (생략)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보건일자리팀-----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

-----.

1. ~ 9. (현행과 같음)

제9조(산림보호국) ① -----

----- 일

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

---.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

-----

-----

-----.

다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2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생략)

③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 2와 같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0퍼센트-----  
-----  
-----  
-----.

④ -----  
-----  
-----.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의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4와 같으며, 별표 6의4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 ⑩ (생략)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림디지털담당관·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항공본부 산림

10퍼센트

⑤

10퍼센트

⑥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숲경관과장

항공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21  
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  
원을 산림청에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임업통상팀은 2025년 1  
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획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

-----  
-----.

제27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                                                                                                                                                                                                                                                           |                                                    |
|-----------------------------------------------------------------------------------------------------------------------------------------------------------------------------------------------------------------------------------------------------------|----------------------------------------------------|
| <p><u>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분장한다.</u></p>                                                                                                                                                                                                                        |                                                    |
|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p>                                                                                                                                                                                                        |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p> |
| <p><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은 2025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정책과장이 분장한다.</u></p> | <p><u>&lt;삭 제&gt;</u></p>                          |
|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p>                                                                                                                                                                                                        |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p> |

|                                                                                                                                                                            |                                                                                                                |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원팀은 <u>2023년 7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br>-----<br>-----<br>----- <u>2025년 7월 31일</u>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br><br>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u>2023년 7월 29일까지</u> ,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4년 7월 29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 <u>2025년 7월 29일</u> -----<br>-----<br>-----.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남북산림협력팀은 2023  
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남북산림협력팀장이 국제산림  
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  
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  
이 지난 날부터 남북산림협력팀  
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  
담당관이 보좌한다.

<삭 제>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321</u>         | <u>322</u> | +1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316</u>         | <u>317</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u>65</u>          | <u>64</u>  | -1  |
|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br>전산주사         | 6                  |            |     |
| <u>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br/>항공주사</u> | <u>&lt;신 설&gt;</u> | <u>2</u>   | +2  |
| ·                              | ·                  | ·          |     |
| ·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333</u>         | <u>334</u> | +1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328</u>         | <u>329</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u>66</u>          | <u>65</u>  | -1  |
|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br>전산주사         | 6                  |            |     |
| <u>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br/>항공주사</u> | <u>&lt;신 설&gt;</u> | <u>2</u>   | +2  |
| •                            | •                  | •          |     |
| •                            | •                  | •          |     |